

보 고 사 항

□ 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안건

1. 회기결정의 건
2.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
3.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
4.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
5. '99년도 세입·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
6. 기금운영 실태조사 받의 동의안
7. 기금운영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
8. 기타 일반안건

□ 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

- 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- 2000. 5. 19

(화순군의회 공고 제2000-3호)

<공고내용>

- 집회일시 : 2000. 5. 25 (金) 10:00
- 집회장소 : 화순군의회 본회의장

□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결된 안건 처리현황

- 화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- 2000. 5. 8 집행부 이송
-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- 2000. 5. 8 집행부 이송
-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- 2000. 5. 8 집행부 이송
- 화순군의회의원외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- 2000. 5. 8 집행부 이송

-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 - 2000. 5. 8 집행부 이송
-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- 2000. 5. 8 집행부 이송
-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- 2000. 5. 8 집행부 이송
-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- 2000. 5. 8 집행부 이송
- 화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 - 2000. 5. 8 집행부 이송
-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 - 2000. 5. 8 집행부 이송
- 2000년도 제1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 - 2000. 5. 8 집행부 이송
 - 고 시 일 자 : 2000. 5. 8
 - 공 포 번 호 : 화순군고시 2000 - 17호

□ 각종 의안 제안상황 보고

- 제84회 화순군의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- 2000. 5. 19 의원발의
 - 발 의 자 : 문팔갑 의회운영위원장 외 4
 - 회 기 : 2000. 5. 25 ~ 5. 27 (3일간)
-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- 2000. 5. 25 의원제의
 - 출석요구내용 : 별 첨
-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
 - 2000. 5. 20 의회운영위원회 제안
 - 제안이유
 -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,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화순군의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

-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제84회 임시회에서 미리 결정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되도록 함과 동시에 피감사기관에서도 수감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- 주요내용

-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
2000. 6. 24 (土) ~ 6. 30 (金) (7일간)

○ 기금운용 실태조사 발의 동의안 - 2000. 5. 19 의원발의

- 제안이유

- 우리군이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과 개별조례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에 대한 운용에 대한 실태를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
- 잘못 운용된 기금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여 금후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기 위함.

- 조사목적

-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에 대한 운용에 대한 실태조사

- 조사범위

-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과 개별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1997. 1. 1 이후 운용 상황

- 조사위원회 : 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

○ 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- 2000. 5. 25 의장제의

- 주문

-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개별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각종 기금 운용에

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- 활동기간 : 2000. 5. 27 ~ 2000. 7. 5 (40일간)
- 구성인원 : 7 명

- 제안이유

- 우리군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개별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에 대한 운용에 대하여 기금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여
- 잘못 운용된 기금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여 금후 기금운용에 철수를 기하도록 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본 건을 제안함.

○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- 2000. 5. 1 군수제출

- 제안이유

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된 화순 효산·대신리 지식묘 구역내 선사유적 공원 조성과 보건소 소독약품 창고 신축 및 진입로, 주차장 등 주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

- 취득토지 현황

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토지소재지	필지수	지목	취득면적	취득예정가
계		8		6,398	352,434
선사유적공원 조성 매입토지	춘양 대신리 도곡 효산리	7	전·답	5,098	52,434
보건소 부지 토지 매입	화순 삼천리	1	답	430	300,000

※ 2000. 5. 10. 총무위원회 회부

○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 - 2000. 5. 16 군수제출

- 제안이유

-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함

- 주요골자

-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자,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도록 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부정적 처리를 예방하도록 함.
-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처리 하고자 할 경우 생산된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량방법 중 탈수방법을 삭제하고 수분함량 기준을 설정함
-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할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전용수거차량 또는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·운반토록 함

※ 2000. 5. 10. 총무위원회 회부